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법률 제 17125호, 2021. 2. 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 및 각급 기관장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행정예고를 게시할 홈페이지를 법원행정처와 같이 법원 홈페이지로 함(안 제3조제2항)

4.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형위원회 다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제3조제1항 중 양형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각각 추가하고, 제3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는”을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는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 -----.</p> <p>②-----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230